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항공보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746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생체 정보를 통해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생체정보의 보호 및 파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권한의 위임 대상자를 현행 지방항공청장에서 소속기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검색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체정보 활용을 위한 생체정보 요청방법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을 규정(안 제9조의2)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요청 시 승객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전송하고, 제공받은 생체정보와 승객이 입력한 생체정보를 정보화기기를 통해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나. 생체정보의 보호방법을 규정(안 제9조의3)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공항운영자등은 생체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암호화기술 적용을 통해 저장·전송,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등을 의무화

다. 생체정보의 파기 방법을 규정(안 제9조의4)

공항운영자등은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후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파기

라.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대상자 변경(안 제20조제1항)

위임 대상자를 지방항공청장에서 소속기관장으로 변경

마. 법령 위탁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조문 정리

1) 위해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검색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20조제2항제1호)

2) 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근거인 시행령 제19조의4를 삭제하고, 해당 위탁근거를 제20조제2항제2호에 반영

바. 과태료 항목 신설(별표 제2조)

법 제51조제1항제3조의2를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보안법 제14조의2, 제38조, 제51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생체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승객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체정보의 제공 및 전송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항운영자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성이 확보된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승객의 생체정보를 수집·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생체정보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생체정보를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대조하는 방법으로 승객 본인 일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운영자가 보유한 생체정보와 정보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의3(생체정보의 보호)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체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체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생체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생체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4. 생체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조치
5. 생체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9조의4(생체정보의 파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항공기가 해당 공항을 이륙하여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후(항공기 탑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절차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지체 없이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4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등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항공청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적정성 검토,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분석·

전파에 관한 업무

별표 제2조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법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3조의2	1,000	1,000	1,0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① 공항운 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행 정기관에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생체정보(이하 “생체정보” 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 는 승객의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 체정보의 제공 및 전송방법 등 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항운영자등이 협의하여 정한 다.</u> <u>②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 자는 보안성이 확보된 정보화기 기를 활용하여 승객의 생체정보 를 수집·처리하여야 한다.</u> <u>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생 체정보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생체정보를 정보화기기를 활용 하여 대조하는 방법으로 승객</u>

현행	개정안
<신 설>	<u>본인 일치를 확인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u> <u>운영자가 보유한 생체정보와 정</u> <u>보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u> <u>제9조의3(생체정보의 보호) 공항</u> <u>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법</u> <u>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체정</u> <u>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u> <u>조치를 하여야 한다.</u> 1. <u>생체정보의 안전한 처리를</u> <u>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u> 2. <u>생체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u> <u>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u> 3. <u>생체정보를 안전하게 저장·</u> <u>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u> <u>의 적용</u> 4. <u>생체정보 침해사고 발생에</u> <u>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u> <u>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u> <u>조치</u> 5. <u>생체정보의 안전한 보관을</u> <u>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u> <u>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u> <u>조치</u> <u>제9조의4(생체정보의 파기) 공항</u>
<신 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분석·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1. (생략) <신설>	<u>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항공기가 해당 공항을 이륙하여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후(항공기 탑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절차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지체 없이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u> <삭제> 제20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 소속 기관의 장-----. 1. ~ 11.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현 행	개 정 안
	<u>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u> <u>1. 법 제2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적정성 검토,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u> <u>2.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분석·전파에 관한 업무</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연 락 처	(044) 201 - 4233